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3일

동탄4동장 인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강 *희	강 *희 2003-05-23	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(청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4-14